

-복식부기 관련 연구용역-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

「공인회계사 검토기준」시안 수립

1. 「공인회계사 검토기준」 시안 수립

(1) 공인회계사의 “검토”에 대한 정의

○ 감사(audit)

- 높은 수준의 확신(합리적 확신, 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
- 적극적 수준의 의견(opinion)을 표명
-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며, 적극적 확신의 표현을 사용

○ 검토(review)

- 정보작성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게 고안된 질문(inquiry) 및 분석적 절차(analytical procedures)를 수행하는 것
- 확증적 증거의 확보절차는 포함되지 않음
- 의견(opinion)을 표명하지는 않고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제공
- ‘검토보고서’를 발행하며, 소극적 확신의 표현을 사용
- 검토는 감사에서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

○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agreed-upon procedures)

- 당사자간에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며, 발견된 사실을 요약(summary of findings) 보고
- 보고서의 용도는 해당 절차를 합의한 당사자에게만 제한되며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의견(opinion)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 확신도 표명하지 않고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
-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를 발행하며 다음과 같이 절차의 수행결과와 발견된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을 이용

○ 재무정보작성업무

- 공인회계사가 회계전문가로서 재무정보를 수집, 분류, 요약하는 것
- 공인회계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상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

□ 감사, 검토,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및 재무정보작성업무의 비교

구분	인증 업무		관련 서비스	
업무성격	감사	검토	합의된 절차수행	재무정보작성
확신수준	높은 수준(*)	중간수준	확신 미제공	
보고형태	주장에 대한 적극적 확신	주장에 대한 소극적 확신	절차 수행결과 발견 사항 보고	정보의 수집, 분류 및 요약
독립성	준수 필요			준수 불필요
업무절차	감사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데 이용 가능한 절차 수행	질문·분석적절차 등 제한된 절차 수행	당사자간 합의된 절차를 수행	재무정보 작성

(*) 절대적 확신은 아님

□ 사례분석

○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대한 증명업무

- 감사대상인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등
- 검토대상인 것은 중간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추정재무제표, 사립대학중점사항 검토 및 보고 등

○ 미국, 영국, 뉴질랜드

- 지방정부의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review)보다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audit)를 하고 있음

(2) 검토인의 독립성 준수 방안

□ 감사인의 독립성

- 재무제표 검토업무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회계감사기준에서는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7가지 윤리 중 첫 번째
 -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independence in fact)과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in appearance)으로 구분
 - 자치단체장 및 소속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검토업무의 정착을 위하여 중요

□ 사례: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사례

- 공인회계사법 및 동시행령
 -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회계감사기준
 - 독립성의 개념, 독립성 훼손 가능한 상황·업무 유형, 독립성 훼손가능성 제거·감소를 위한 제도, 독립성상실, 직무 제한, 관련문서 보존 등을 규정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 독립성 훼손위협외의 파악,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지의 여부 평가, 위협을 수용가능 수준이하로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의 파악과 적용 등을 규정

□ 검토인의 독립성 준수방안

- 검토인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및 동시행령, 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구됨
 - 따라서 재무보고서 검토와 관련된 별도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 직책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무 사무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 포함함)를 말함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과 부지방자치단체장, 실국장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원(Director or officer)은 직책에 관계없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 등 주요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
- 지방의회 의원이 임원에 해당하는가는 지방의회 의원이 내부감시기구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외부감시기구에 해당하는가에 의해 결정
- 검토인은 주민을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의원은 외부감시기구로 보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의하면 검토업무의 착수일부터 검토보고서 발행일까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일반 기업과는 달리 검토계약 후 선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검토인의 직계가족에 지방자치단체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수 있음.
- 검토인은 검토업무의 착수일부터 검토보고서 발행일까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선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검토인의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검토기준에 따라야 함.
- 독립성을 위반하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재무보고서 작성자와 검토인이 동일한 경우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독립성 위배가 되므로 검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불가능
- 공인회계사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
- 공인회계사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
- 감사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서 재무보고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을 검토업무팀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검토업무를 해지하여야 함
- “재무제표작성 지도업무”와 작성된 재무보고서의 검토의 병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지도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순한 조언은 무방하지만,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재무제표 작성 전산업무를 구축해 주고 검토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상 독립성위배에 해당

(3) 검토업무의 범위설정

- “감사” 또는 “검토” 또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선택 문제
- 지방재정법은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재무보고서에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식 포함)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할 것을 규정
- 따라서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는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감사’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므로 현 단계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검토’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임
 - ‘검토’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중 어떤 것인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 검토결과의 보고방법(검토보고서의 양식 포함), 검토업무기준, 공인회계사의 책임 등 많은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에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보다는 원칙적으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처음 검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 볼 때 본래 의미의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에 비하여 검토업무는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많아지고 공인회계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아지므로 보수 상승 가능성이 있음
- ‘검토’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선택과 관련된 대안
 - (제1안) 검토의 의미를 본래 의미의 ‘검토(review)’로 보고 검토업무기준도 ‘검토’를 대상으로 만들지만, 실제 시행초기에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성격이 강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본래 의미의 ‘검토’로 나아가는 방법
 - (제2안) 시행 초기에는 공식적으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검토’로 나아가는 방법
 - 시행 초기에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에 가까운 검토를 수행한 후 검토의 수준을 높여가는 안(제1안)이 바람직.

-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에 가까운 검토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인 회계사, 행정자치부 등의 합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은 원칙적으로 본래 의미의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할 것임

□ 검토업무의 범위 설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는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업무도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재무제표와 주석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단계별로 검토업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부록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 제8조에서는 복식부기 시행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에 따라 검토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즉, 시행초기에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 1단계(초기):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단계,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인회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2단계(중기): “검토” 단계, 재무보고서 전반에 대한 소극적 확신 표명
- 3단계(장기): 궁극적으로는 “검토”의 단계가 아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가 실시되어야 함.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4) 공인회계사의 검토수행결과 표시방법

-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 검토업무수행결과의 표시방법은 검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되나, 어떠한 경우든 일관된 체계를 갖고 검토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검토기준’의 본문에서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검토보고서 작성에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됨.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의 개요
 - 지방재정법에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또는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방향
 - 검토보고서 작성 사전단계에서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등 확보
 - 검토보고서 작성 수행단계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범위·대상·수준 등 정립
 -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단계로 품질관리(감리) 관련 제도 마련
 - 제정개요
 - 법령 형식 : 행정자치부부령 또는 예규
 - 법령구성 : 총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
-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은 검토의 의미를 본래 의미의 ‘검토’로 가정하였음. 따라서 검토업무기준(안)의 본문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의 양식도 이러한 가정 하에 제시한 것임.
 - 따라서 검토의 의미를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가 수정되어야 함
 - 제8조에서는 복식부기 시행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에 따라 검토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즉, 시행초기에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를 가능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로 하는 경우의 보고서 표준양식을 본 절의 부록으로 제시함.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경우는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하므로 감사나 검토와는 달리 결과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의 주요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검토업무기준의 준수 등
- 제2장 검토업무의 일반원리 : 윤리기준 준수, 검토인의 자세, 검토업무의 범위·방법, 검토업무 수행결과 표시 등
- 제3장 실시기준 : 실시기준의 적용, 문서화, 재무제표 검토절차와 고려사항 등
- 제4장 보고기준 : 출납폐쇄기한 내에 발생한 사건, 검토보고서 일자, 보고사항 등
- 부 칙 : 시행일 등
- [별표 1] 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별표 2]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검토인’에 대한 정의 정립(안제2조)
- 검토의 정의 : 동 기준에 따른 절차를 검토인이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
- 검토인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를 의미함. 검토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 감사반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는 특수조직의 형태임.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감사반을 별도의 감사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토인의 범위에 감사반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동 규정의 적용범위 설정(안제3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검토인의 윤리기준 및 자세(안제6조, 안제7조)
- 검토인은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 등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준수 요구
- 검토인은 재무보고서가 왜곡 표시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검토업무 추진
- 검토업무의 범위 설정(안제8조)
- 검토업무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 전반에 걸쳐 실시
- 다만,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시행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에 따라 검토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검토방법(안제9조)
- 검토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복식부기 관련 재무회계 결산자료에 의거 실시
-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 수행결과 표시(안제10조)
- 검토업무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통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보고서에 표시되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의 시기(안제11조)
- 지방자치단체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에 재무보고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인에게 제출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에 수행이 완료되도록 함(최소 30일간의 검토기간을 둠.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5주간의 감사기간을 둠)
- 다만, 불가피하게 검토기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검토 실시기준(안제13조, 안제15조)
- 검토인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요한 증거사항은 필히 문서화 하도록 함
 - 검토시 고려사항과 절차(안제16조, 안제18조)
- 검토절차시 고려사항과 재무보고서의 검토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 검토보고서 보고기준 및 제출(안제20조, 안제22조, 안제25조)
-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표명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검토보고서 일자(날짜)는 검토업무가 종료된 일자로 하며, 자치 단체장에 의해 재무제표가 승인된 일자보다 빠를 수 없음.
- 주식회사의 감사에서는 감사보고서일과 동일자로 대표이사 등이 서명한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검토업무 종료시 검토보고서일과 동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명날인한 최종보고서를 검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토인은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임.
- 검토보고서는 검토종료일부(날짜)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
 -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안제21조)
- 출납폐쇄기한(다음 연도 1월과 2월) 중에 이루어진 자금의 출납과 관련된 거래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회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됨.
-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에 자금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해당 연도의 재무보고서에 반영될 사항이 있는가를 질문하여야 함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안제23조)
-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도록 함
- 검토보고서의 배열 순서는 제목, 수신인, 도입문단, 범위문단, 검토결론문단, 검토보고서 일자, 검토인의 주소,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등으로 함
 - 검토결과의 유형 제시(안제24조)

- 검토의 결과 재무보고서가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검토결론문단에 기술
 - 만약 재무보고서가 재무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1)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하거나 (2)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
 - 만약 검토업무 수행시 중요한 범위의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는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검토결론을 (1)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하거나 (2) 어떤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함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경우에는 발견된 사항만을 보고하므로 안제24조와 같은 검토결과의 유형제시가 불필요함)
 - 검토보고서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관련 제도 마련(안제26조)
- [첨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토”는 이 기준에 따른 절차를 검토인이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2.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에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토업무기준을 따른다.

제4조(검토업무기준의 준수)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검토업무의 일반원리

제5조(일반원리의 적용) 일반원리는 검토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6조(검토인의 윤리기준 준수) 검토인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윤리기준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
2. 공정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4. 비밀유지
5. 전문가적 품위

제7조(검토인의 자세) ①검토인은 재무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장확인, 문서입수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8조(검토업무의 범위) ①검토업무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의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초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에 따라 검토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할 수 있다.

②검토인은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검토방법) ①검토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무회계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검토인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할 때 검토업무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업무 수행결과 표시) 검토업무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통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며, 이와 같은 확신은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보고서에 표시된다.

제11조(검토업무의 시기)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인회계사 검토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에 재무보고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 검토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에 수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결산업무의 지체로 인해 충분한 검토기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실시기준

제12조(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검토업무 계획의 수립, 검토실시 및 검토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검토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13조(검토인의 검토계획 수립) ①검토인은 검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 회계제도, 기능과 업무의 성격 그리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종전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한다.

③검토인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제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

제14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토인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토인은 이러한 업무가 검토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5조(문서화) 검토인은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기준에 따라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제16조(검토절차시 고려 사항) ①검토인은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를 포함하여 검토인이 습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항목의 범위
5. 계정잔액 및 거래의 중요성

②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고려사항) 검토인은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이용하는 자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재무제표의 검토절차와 고려사항) ①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인 회계실체에 대한 이해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 등 회계정책에 관한 질문
3.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외거래 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의 충분한 대사 검증
4. 회계기록, 거래의 분류 및 요약,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한 질문
5. 재무제표의 모든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장 주장과 관련된 질문
6. 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석적 절차(이런 절차는 전기재무제표와 당기재무제표의 비교, 필수보충정보의 분석적 절차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적용할 때 검토인은 전년도에 수정사항이 있었을 경우 그 발생 유형을 고려한다.

1. 내부감사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조치가 있었을 경우 이에 관해 질문
2. 검토인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재무제표에 적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부문을 타검토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보고서를 입수
4. 재무 및 회계 관련 책임자에게 모든 거래는 누락없이 기록되었는지 여부, 재무제표가 지자체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

제4장 보고기준

제19조(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검토인이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20조(검토보고서의 보고방법) ①검토인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검토보고서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②검토인은 검토업무와 검토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업무의 범위를 기술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기술한다.

제21조(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제22조(검토보고서 일자) ①검토인은 검토업무가 종료된 일자를 검토보고서 일자로 하며 검토보고서일자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토인이 검토보고서 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없다.

②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작성되어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에 관한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재무제표가 승인된 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다.

제23조(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 ①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검토대상 재무보고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토업무기준,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된다는 기술,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므로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기술)

5. 검토결론문단(소극적 확신의 표명)

6 검토보고서 일자

7. 검토인의 주소

8.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②제3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와 구분하기 위해 제목에 “독립적인”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검토보고서 표준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검토결과 유형) ①검토의 결과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검토결론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 만약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왜곡표시의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왜곡표시의 영향을 예외사항으로서 범위문단 다음의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검토 결론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1. 예외사항인 왜곡표시의 영향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2. 왜곡표시된 사항이 재무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예외사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한다.

③만약 검토업무 수행시 중요한 범위의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외사항으로서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검토결론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1. 그러한 범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수정사항의 가능성을 예외사항으로 하여 그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2. 범위의 제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검토인이 어떤 수준의 확신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한다.

제25조(검토보고서 제출) 검토보고서는 검토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검토보고서의 사후관리)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령 제24조에 의거 제출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재 무 회 계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지방회계기준)』 및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는 비치되어 있는가? 3. 재무회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회계부서(복식부기담당)는 물론 전 실,과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4.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를 위해 실,과,소 등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복식부기담당)의 업무분장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 입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거래는 어떤 주기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예: 일, 월) 2. 수입거래의 회계처리를 위한 재정정보의 제공업무는 세정부서(징수관)와 회계부서(복식부기담당)간 적절히 업무분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주기적으로 수입거래와 징수부의 내역을 대사하여 적정성 및 차이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통 합 재 무 보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결과를 재무보고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령의 제도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공기업결산재무제표를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변경·조정하였는가? 3. 회계간 내부거래를 유형별(수익비용, 출자자본, 채권채무)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반영하였는가? 4. 내부거래에 따른 분개처리 결과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 5. 내부거래를 반영한 이후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의 통합재무제표 상 값이 제거되었는가? 존재한다면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p style="text-align: center;">공 시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총평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정분석 등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2.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3. 지방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필수적 주석사항 및 보충적 주석사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4. 지방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부속명세서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5.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필수보충정보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유 동 자 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자금은 만기 등을 기준으로 적정히 분류되었는가? 2. 재정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내역과 비교검증이 이루어졌는가? 3.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의 과목별 내역과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4.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설정방법은 회계처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기간손익의 계산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재고자산은 비용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자산화 필요가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었는가?
투 자 자 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 타 회계,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만기를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계상되었는가? 또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되었는가? 2. 대여금 중 체납되어 결손경험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손설정되었는가? 3.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품목 및 기관성격 구분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증권에 계상되었는가? 4. 공기업 중 경영실적 악화, 청산 등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5.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은 공기업결산서 및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내부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기 타 비유동 자 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기간종료시 회수가 예상되는 약정금 등은 보증금으로 모두 반영되었는가? 과목별원장의 임차료 등 과목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2. 산업재산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닌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었는가? 3. 상표 등의 등록이전에 디자인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산업재산권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4. 한글, 엑셀 등 범용소프트웨어는 전산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5. 결산기준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건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일 반 유 형 자 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연도 중 기존 건물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구축물은 건물과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주민편의 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었는가? 3. 자산명에 의해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에 속하는 것은 기계장치로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회계처리지침에 의한 자산화기준(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단가 10만원 이하로 집기비품으로 계상된 경우 증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이 물품관리의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구 분	점 검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일 유 자</p> <p style="text-align: center;">반 형 자 산</p>	<p>5. 청사, 동사무소 등의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식재한 입목의 내역 및 관련 토지는 적절히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p> <p>6.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일반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등에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p> <p>7.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p> <p>8.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민 편 의 시 설</p>	<p>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p> <p>2. 각 주민편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p> <p>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p> <p>4.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p> <p>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p>

구 분	점 검 사 항
주 민 의 설 편 시	<p>6.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p> <p>7. 각 시설의 개별자산별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p>
사 회 기 반 시 설	<p>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p> <p>2. 각 사회기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p> <p>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 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p> <p>4.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p> <p>5. 각 시설에 대해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단,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는가?</p> <p>6.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p>

구 분	점 검 사 항
사 회 기 반 시 설	<p>7. 각 시설의 개별자산별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p> <p>8. 관련 수선유지비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가액과 관련 수선유지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p>
부 채	<p>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되어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되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p> <p>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되었는가?</p> <p>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영되었는가?</p> <p>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99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p> <p>5.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히 설정되었는가?</p> <p>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장기미지급금으로 적절하게 분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p> <p>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는가?</p>

구 분	점 검 사 항
순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방채를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2. 지방채상환기금(감채기금) 등이 있는 경우 특정순자산이 계상되었는가?
수익과 비용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은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류에 불구하고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C.O.A.)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처분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관리전환 등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별표 2】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1) 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지방자치단체의 20XX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 20XX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범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재무제표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된 재무제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은 합리적으로 확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반영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지방자치단체의 20XX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 20XX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범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재무제표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된 재무제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은 합리적으로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반영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3)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지방자치단체의 20XX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 20XX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범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재무제표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된 재무제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은 합리적으로 확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반영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주석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의할 경우 건물은 XXX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XXX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보고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4) 중요한 예외사항으로 인한 검토결론 표명 거절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지방자치단체의 20XX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 20XX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임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부록] 합의된 절차 수행 결과보고서 사례

합의된 절차 수행 결과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별도 첨부한 지방자치단체의 20XX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 20XX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범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재무제표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된 재무제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의 절차에 따라 질문과 분석, 재계산, 관찰, 대사를 수행하였습니다.(수행한 절차 요약)

업무 수행결과 우리의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회계관리>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가 비치되어 있음

.....

<수입관리>

.....

(예외사항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함)

상기절차는 감사업무가 아니므로 감사의견 및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